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. 2. 19 선고 2018가단4967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 종결 2019. 1. 22.

판결 선고 2019. 2. 19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고흥군 C 대 116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) 부분 27㎡을 인도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전남 고흥군 C 대 116㎡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는 1968. 8. 1. 원고의 아버지인 D의 소유였다가 1983. 3. 20.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3. 12. 15. 원고의 동생인 E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고, 이후 1995. 3. 1.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7. 7. 19.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나. 전남 고흥군 F 대 152㎡(이하 '피고 소유 부동산'이라 한다)는 1968. 8. 1. G의 소유였다가, 1983. 3. 20. 매매를 원인으로 1993. 12. 15.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, 이후 2005. 9. 21.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5. 9. 28.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쳐졌다.

다. 원고 소유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) 부분 27㎡(이하 '이 사건 계쟁 토지'라 한다)은 1970년 이후부터 H 및 피고가 점유하여 사용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,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, 감정인 1의 지적현황측량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

가) 피고의 주장

피고는 G 및 H, 피고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.

나) 판단

1)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,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(민법 제245조),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,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(민법 제197조). 또한 취득시효기간의 만료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를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

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으며(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7다6186판결 등 참조),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,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의 인도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(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2다51280 판결 등 참조).

2)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쟁토지를 G, H이 점유하였고, 피고는 종전 소유자인 G, H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바, 위 각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,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고,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기산점은 H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한 1993. 12. 15.이며, 위 기산점으로부터 20년이 지난 2013. 12. 15.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취득하였다.

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, 피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으며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박성경

도면

현황 표시	
범례	의정
	담장 및 치마선
	여래빈칸



면적 표시	
지번 부호	면적(㎡)
가	99
나	97
	110

{특수}지적현황측량 결과도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.